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2004년 3월 18일

3. 제안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능이 이관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이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 유사중복조례 폐지.

4. 주요골자

- 2001년 11월 30일자로 제정된 조례 제268호 충청북도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관리가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식산업진흥원에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를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충북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4. 1. 1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지금까지 동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와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무상 사용하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토지 및 건물의 활용계획 및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